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 5.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현황 및 평가	2
1. 진입규제 현황	2
2. 평가	4
III . 개선방안	6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7
2. 진입장벽 낮추기	8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17
IV . 향후 추진계획	20

I.

추진배경

- ※ “VIP 신년 기자회견(’18.1.10)” :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음
- ※ “100대 국정과제” : 금융업 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그간 국내 금융산업이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존재

*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 대출·주식 등 외형적 성장을 토대로 실물경제의 성장 뒷받침 / 부실 정리시 손실부담을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

-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로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해 보수적이고 안정적 영업에 치중한다는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 경쟁 등의 혜택 등을 향유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 인구구조변화 등 환경변화로 혁신적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해외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인슈테크 확산, 고령화·반려동물 수요 증가에 따른 유엔대용신탁·펫보험 등이 활성화

□ 반면, 금융업 진입규제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평가

- 외환위기사 경험한 대규모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적극적인 진입정책을 운영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한 측면
- 인가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불투명한 정보공개,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

* 특히, 케이뱅크 특혜논란 등과 관련하여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제고를 권고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II.

금융업 진입규제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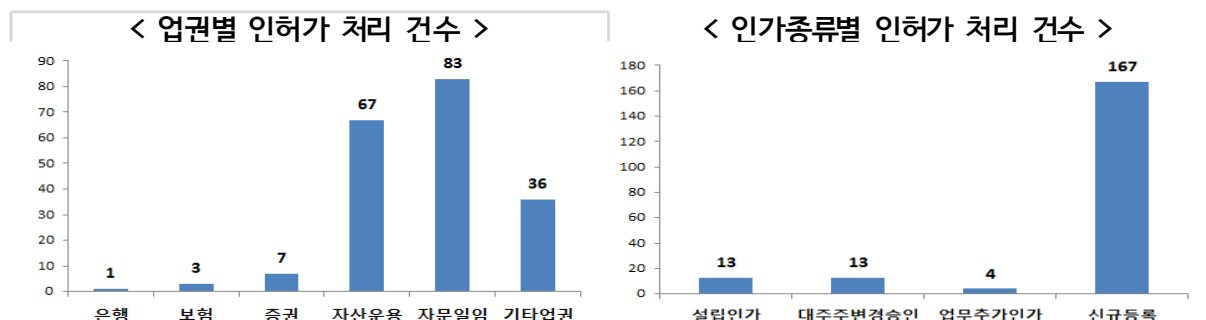
1 현황

(1) 법·제도적 측면

- 금융업 진입규제는 크게 **인가***와 **등록**으로 구분
 - * 인가/허가/승인은 강학상 개념차이가 존재하나 실정법에서는 혼용해서 사용
 - **(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사과정에서 재량의 여지 존재**
 - 예금자(투자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필요성 등이 큰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공모)자산운용업, 신용카드업, 저축은행업
 - **(등록)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만 하면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 **재량의 여지 적음**
 - 투자자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낮은** (사모)자산운용업, 자문·일임업, 할부·리스업 등
- **업무범위를 의미하는 인가단위와 등록단위가 존재(보험·금투)**
 - **업무의 종류, 투자상품 및 투자자(영업의 대상)에 따라 인가·등록 단위가 구분되며, 단위별로 인가·등록**
 - **인가단위별로 자본금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인가단위는 진입장벽의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인가관련 법령 등은 금융회사 본인과 금융회사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 등)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
 - **(금융회사) 법정 최소자본금, 인적(전문인력)·물적(전산설비 등)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
 - * 금융관련법령 위반,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등

(2) 운영·절차적 측면

-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예비인가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운영
 - 구체적인 인가절차는 금융위 접수 → 금감원의 요건충족 여부 심사 → 금융위원회 의결로 진행(예비인가, 본인가 공통사항)
 - 인가요건을 법규로 정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 존재
 - 진입정책 의사결정은 산업내 경쟁도 및 정책기조 변화*, 구조조정**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 예 : '07.7월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인가단위 세분화, '15년 금융개혁 추진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 ** 예 :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업 신규허가 부재
 -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서도 '경미한 위반시 예외인정' 등 일부 추상적 요건에 대해 정성적 판단이 필요
 -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인가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인가매뉴얼(금감원 홈페이지), 인가핸드북(e-금융민원센터) 등을 통해 인가절차 및 관련법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인가신청자는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인가 심사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조회 가능
 - * 신청완료 → 접수완료 → 공고 → 심사 → 안건준비 → 의결
- ※ '17년중 진입관련 인허가 처리건수는 197건(설립인가, 대주주변경승인, 업무추가인가, 신규등록 등 진입관련 인가·등록만 포함)



2 평가

- ◇ 현행 운영체계·제도가 신규 참가자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
- ◇ 절차의 불투명성 등으로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도 어려움

(1) 적극적 진입정책 추진체계 부재

- ①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측면
 - 담당자는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및 금융회사 부실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
 - 금융산업의 혁신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신규진입에 대해 보수적, 위험기피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
- ②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금융당국의 내부논의를 통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소비자, 시장전문가 등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의 논의 부재로 의사결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당위성이 부족

⇒ 금융당국의 묵인하에 기존 금융회사가 지대(地代)를 향유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요인

(2)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특화금융회사 부재

- ① 은행, 증권, 보험업 등 주요업권의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참고2 : 해외사례>
 - (은행) 자본금요건은 1,000억원으로 영국(500만유로≒65억원), 일본(20억엔≒196억원)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보험) 자본금요건(종합보험사)은 300억원으로 미국(200만불≒21억), 영국(370만유로≒48억), 일본(10억엔*≒98억)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자본금요건(1천만엔≒1억원)을 적용 → 상세사례는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10p)'를 참고
- (증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진입규제가 복잡하고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도 높은 수준*
 - * (국내)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인가제로 운용/ (美·日) 등록제로 운영
(국내) 자본금요건이 5~500억원 / (美) 5천~150만불, (日) 5천만~30억엔
- (자산운용·자문·일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진입규제가 복잡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도 높은 수준*
 - * (국내) 자산운용업을 인가제로 운용/ (미국·일본) 등록제로 운영
(국내) 자문·일임 자본금 요건이 1~15억원/(미국) 자본금 요건 없음

⇒ 새로운 아이디어로 금융업에 진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려운 환경

(3) 절차적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

- ① 인가 진행시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평가
 - 인가매뉴얼, 인허가 포털 등을 통해 인가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중이나 관련 법규만 적시하는 등 형식적 안내에 그침
 - 인가시 적용되는 실질적인 기준이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금융회사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② 법령상 처리기한(통상 3개월)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실제 인가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체감*
 - * 인가심사시 처리기간에서 제외(타기관과의 협조 등)되는 사유가 존재

⇒ 인가절차와 관련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당국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자의성 논란도 야기

< 기본 방향 >

- 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 ②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 ③ **진입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진입규제 개편의 비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진입장벽 낮추기	진입과정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금융산업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진입정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 소액단기보험회사, 온라인보험사 활성화 ✓ 중개전문증권사를 인가제→등록제 전환 ✓ 자문, 일임업 자본금요건 완화 ✓ 특화신탁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기준 구체화, 인가매뉴얼 개편 ✓ 인가 진행상황 통보 ✓ 쟁점 발생시가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 ✓ 인가「Fast Track」도입

금융산업 혁신 촉진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험자본 공급
고용창출

진입정책 신뢰성제고
인가과정의
투명성, 신속성,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산업의 혁신 및 건전한 발전 도모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금융당국의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개선)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 <참고3 : 국내외 참고 사례>

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 경쟁도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 (i) 정량적 요소 : 수익성, 건전성, 시장집중도 등
- (ii) 정성적 요소 : 소비자만족도, 혁신성 등

②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영국 FCA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운영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16년부터 Annual Competition Report를 발간 중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를 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2 진입장벽 낮추기

◆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 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

< 은행업 >

☞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

(1) 단기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 (현황)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
 -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신 규모가 인가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
 - * '18.4월말 기준 총 고객수 약 660만명, 수신 9조원, 여신 7조원
 -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 기존 은행들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 달성
 - * 24시간 영업 → 카카오뱅크는 영업시간외 계좌개설 비중이 57%를 차지
 - **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2%대 예·적금 특판 상품 출시
 -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
- (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
 -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2) 중장기과제 : 시중은행의 과점적 시장상황 개선 및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고찰

- (현황) 은행산업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규제체계는 부족한 측면
 - 은행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예대마진 중심의 보수적 영업관행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담대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동질화되면서,
 -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한 경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경쟁촉진을 위한 특화은행 신설 노력이 지속*
 - * '02년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시도
 - 지난 '15년 IT·금융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
 - 다만, 인가정책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부족했던 측면
 - * 예 : 온라인 영업 등 영업방식 및 업무범위 등에 맞는 규제 정비
- ⇒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은행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개선)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에 대한 검토
 - 유연한 인가정책 운영 뿐만 아니라 인가단위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
 -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

< 보험업 >

☞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 추진

(1)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허용(보험업법 개정)

- (현황)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곤란
 - 영위하려는 보험업 종류별로 높은 수준의 단일 자본금이 설정
 - * 예) 생명보험 : 200억원, 질병보험 : 100억원, 상해보험 : 100억원
 -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
- (개선)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
 - * 해외사례 : 일본의 손보사인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의 제휴·협력 관계 체결 등을 통해 펫보험 특화 손보사로 성장
- ①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
 - * 연구용역, 해외사례분석 등을 거쳐서 세부적인 도입방안 마련
- ② 다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RBC·공시 등 보험사의 건전성·투명성을 위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③ 기존 보험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신생업체들의 신규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운영

< 참고 :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06년 도입) >

구분	일반보험사	소액단기보험사
진입방법	허가제	등록제
최저자본금	10억엔	1천만엔
연간보험료 상한	제한 없음	50억엔 이하
보험기간	제한 없음	손보 2년, 생보 1년
보험금 상한	제한 없음	손보 1천만엔, 생보 3백만엔, 의료 80만엔

(2)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신설 촉진(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현황) 온라인전문보험사 제도는 '03년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되지 못한 상황

* 일반보험사 대비 2/3 수준의 자본금으로 설립 가능

○ 온라인전문보험사는 1개에 불과하며,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 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한계

* '13.10월 교보생명이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설립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
 당기순이익(억원) : ('14년) △167 → ('15년) △212 → ('16년) △175 → ('17년) △187

※ 온라인채널의 긍정적 효과

■ 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채널 대비 보험료 절감 효과가 약 15% 이상

< 온라인 채널과 일반채널의 효과 비교 >

	온라인채널*	일반채널*
사업비 비중('16년)	8.1%	23.7%
자동차 보험료(예시)	56만원	67만원

* 일반.온라인 보험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보험사 기준

■ 불완전판매비율도 0.01%로 다른 채널(전체 평균 0.28%)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개선)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①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소

*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

② 온라인 쇼핑몰의 간단손해보험(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관련 보험) 판매허용 등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온라인판매채널은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③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

(3) 특화보험사 신설 활성화(행정조치)

□ (현황) 모든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종합보험사 중심의 산업 구조*로, 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않음**

*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16년기준) : 생보산업 99.5%, 손보산업 92%

** '10.9월 IBK연금보험 허가 후 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부재

○ 인가정책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잠재수요자의 상반된 인식하에 보험산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참가자의 적극적 진입시도 부재

- 금융당국은 신규진입이 일관되게 허용되어 왔다고 인식하나, 잠재수요자는 신규진입이 차단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인식

○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에 치중하는 산업구조적 특성상 혁신적인 서비스, 보험료 인하보다는 모집채널의 경쟁에 의존

* 설계사 등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에게 찾아가 영업하는 방식

⇒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경쟁이 부족한 측면

□ (개선)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

○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을 기대

* IBK연금의 ROA는 생보사 평균(0.48%, '17년)을 상회:('15)0.67%('16)0.95%('17)1.02%

※ 한편,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도분석을 토대로 시장에서 종합보험사 설립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

< 금융투자업 >

☞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진입규제 완화

(1) 중개전문증권사 설립 촉진(자본시장법 개정)

□ (현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특화중개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

- * ① 53개 증권회사 중 종합증권업 인가 보유회사가 46사(17.6월말 현재)
② 주식·회사채 발행규모 중 **중소기업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증권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함

○ 현재 투자중개업이 인가제로 운영*(자본금 5억~200억원)됨에 따라 등 해외**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음

- * 예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은 등록제로 운영
- ** 美·日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금 요건도 낮음 [(美) 5천~150만불, (日) 5천만엔 이상 수준]

○ 업무범위 및 위험도 등에 차등화되지 않은 규제 적용*으로 특화·전문 소형증권사 출현이 어렵다는 평가

- * 취급 상품, 영업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

□ (개선)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 * 예시 : 비상장주식/코스닥.코넥스/사모증권.펀드지분 등

①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로 전환*

- * 단,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중개업 등은 인가제로 유지

②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③ 장기적으로 NCR 등 일반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선별적으로 적용 받도록 하여 규제준수 비용을 절감

< 참고 : NPM, Sharespost 등 미국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사례 >

- (등장배경) 닷컴 버블이후 IPO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사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비상장 주식 유통수요가 크게 증가
- (유동성 공급) 온라인상에서 기업과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
 - 자금회수가 필요한 주주가 회사 또는 유통플랫폼에 주식매도를 요청하면 유통플랫폼이 거래상대방탐색, 결제 등을 대행
- (정보비대칭 해소)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정보 교류장치 마련

(2) 1인 투자자문회사 등 설립 촉진(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 (현황) '17말 기준 179개의 자문사가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
 - * '17.6월말 기준 자문수탁고 11.2조원중 개인대상 자문은 0.5조에 불과
- 업무위험도, 해외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 등 현행 제도는 자문업 활성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
 - * 미국의 경우 자문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 등 별도규제 부재
- (개선) 진입규제를 간소화·완화하여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 확대 등 자문·일임업 활성화를 촉진*
 - * 이를 통해 자문업 → 일임업 → 사모운용업 → 자산운용업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 분야 창업·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기여
- (자문업) 등록단위를 7개→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 * ①모든 상품, 모든 투자자 대상 : 8억원 → 2.5억원
 - ②펀드, ELS 등 금융상품자문업 : 1억원 (현행 유지)
- (일임업) 등록단위를 6개→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요건 완화*
 - * ①모든 상품, 전문투자자 대상 : 13.5억원 → 5억원
 - ②모든 상품, 전문+일반투자자 대상 : 27 → 15억원
- ※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임업 영위시 자문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3) 특화신탁회사 설립 촉진(신탁업법 제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

□ (현황) 업무의 기능별 위험도에 비해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어 특화신탁업자의 출현**을 촉진하지 못하는 상황

- * 신탁 재산별로 100억 ~ 25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
- ** 해외의 경우 신탁을 활용하여 고령화, 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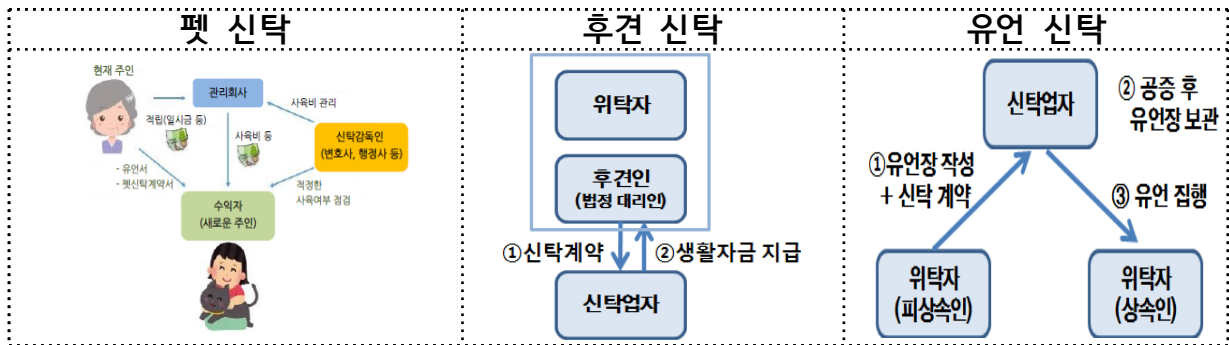
○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위주의 산업구조로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산에 대한 관리기구로서 신탁업 기능이 미약*

- * ① 수탁고/GDP : (일본) 198%, (미국) 96%, (한국) 50%
- ② 금전신탁, 부동산 등을 제외한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0.2%에 불과(16말)

□ (개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 * 예 :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 250억원으로 차등화

< 주요 신탁 서비스 예시 >



(4) 부동산신탁 추가설립 허용(행정조치)

□ (현황) 부동산신탁 시장은 지속 성장*해 온 반면, '09년 (2개사 인가) 이후 추가진입 없이 총 11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업 중

- * 수탁고(조원) : ('09)124.0 → ('13)118.8 → ('17)178.5
- 당기순이익(억원) : ('09)907 → ('13)1,223 → ('17)5,061

□ (개선)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진입 허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

< 업권 공통사항 >

심사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각업권법 시행령 등 개정)

□ (현황) 인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심사대상이 과도하거나 심사요건이 불합리한 경우 존재

① 보험, 금투 등의 업무추가 인가시 대주주와 금융회사 모두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부담

*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사실이 없을 것 등

② 심사대상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관련자의 포함여부 상이) 및 임원의 범위가 업권별로 상이(임원 vs 발기인 등)

③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업권별로 달리 규정

□ (개선) 심사대상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① 시장에 既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위주로 심사

② 심사대상 대주주 및 임원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

<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업권별 비교 및 개선방안 >

	보험	금투.여전.저축	개선방안
심사 대상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사실상지배자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사실상지배자

* 은행 : 엄격한 소유규제에 따라 심사대상이 10%초과 동일인집단 등으로 타업권과 상이

< 심사대상 임원의 범위 업권별 비교 및 개선방안 >

	은행	보험	금투	저축	카드	개선방안
대상	발기인.임원	발기인	임원	발기인.임원	없음	임원

③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

	은행	보험	금투	저축	카드	개선방안
비율	200%	300%	200%	200%	180%	200%

3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금융업 진입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진입 정책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

(1) 인가 세부기준 구체화(인가매뉴얼 개편)

- (현황)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
- (개선)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①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심사요건은 삭제*
 - * 예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신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물적 설비 구축
 - ② 추상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 * 예 :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경미한 경우는 제외
 - ③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반복적인 법령오해 사례 등을 인가매뉴얼에 모두 반영

(2) 인가 진행상황 자동통보(인허가포털 개편)

- (현황)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금융위)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한적
 - *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 자진취하) → 안건준비 → 의결/ 결정

- (개선)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중요일정 등을 자동 통보

< 처리단계 안내 화면 (예시) >

처리절차 및 진행상황

step 1

신청완료

2008-06-06

step 2

접수완료

2008-06-09

step 3

광고

step 4

심사

step 5

안건준비
(검토보고)

step 6

의결·결정

구분	완료일자
사실조회(대내)	20XX-XX-XX
실지조사	20XX-XX-XX
외부평가위원회	20XX-XX-XX
...	...

※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일자입력시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email 또는 SMS 등으로 알림 송부

(3) 쟁점 발생시 외부전문가 의견 적극 활용(행정조치)

- (현황) 인가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판단에 의존
- (개선) 인가매뉴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자문위원회*,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강화
 - *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종전에는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없으나 건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새로이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 ** 인가 관련 법령해석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 등
-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공개

(4) 인가과정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 (현황)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18.12.20) :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개선) 인가과정에서 인가담당 외부인, 금융위(원) 퇴직자 등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인가담당 외부인 등과 접촉하는 공무원은 접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시행
 - * 금융위 훈령 : '18.3.27일 제정 → '18.5월 시행

< 인가절차의 신속성 제고 >

(1) 인허가 심사의 「Fast Track」 도입(인가매뉴얼에 반영 등)

- (현황) 인가의 중요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가절차를 운영
- (개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
 - ①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예 : 6개월)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 : 예비인가시 미충족 요건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및 심사
 - ② 정형화된 인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등으로 신속처리
 - * 예 : 저축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증여 등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을 5% 이하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

(2)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도입(감독규정 반영 등)

- (현황) 법령상 인가 처리기한이 정해져있으나(예 : 3개월),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에 따라 등으로 최종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③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 기간
- (개선) 인가 처리기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를 마련
 -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요청 사유, 검찰 등의 조사로 처리기한에서 제외되는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인가매뉴얼에 반영
 -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 * 예 : 법령상 정해진 인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제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산)

IV.

향후 추진계획


◇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① 행정조치로 시행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시행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
 - *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 →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
-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 인가과정에서의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은 즉시 적용하고, 인가매뉴얼 및 포털 개편도 조속히 추진

②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

*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

※ 세부 추진일정  <참고1>

참고1 세부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경쟁도평가위원회 신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2분기~
2. 진입장벽 낮추기		
① 은행업		
· 은행 신규인가 검토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및 추가인가 방향 수립	'18년 중
② 보험업		
· 소액단기보험회사 신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18.2분기~
· 온라인보험회사 활성화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18.2분기
· 특화보험사, 종합보험사 신설 활성화	▶보험산업 경쟁도 평가 ▶인가신청시 인가절차 진행	'18.2분기 '18.3분기~
③ 금융투자업		
· 중개업 등록제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18.2분기
· 자문일임업 진입규제 개편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18.2분기
· 신탁업 진입규제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는 신탁업법 제정안 마련	'18.2분기
· 부동산신탁업 신설 허용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인가신청시 인가절차 진행	'18.2분기 '18.3분기~
④ 심사대상·요건 합리화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 마련	'18.2분기
3.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 인가매뉴얼 개편	▶인가매뉴얼 개편	'18.2분기~
· 진행상황 통보	▶인허가 포탈개편	'18.2분기~
· 외부인 접촉 체계적 관리	▶외부인접촉 관리규정 시행	'18.5.1
· 인가 심사 중간점검제도	▶은행, 보험, 금투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18.2분기

< 은행업 >

-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한 은행업 인가단위(1개)를 운영하나, 최소자본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

<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요건 국가별 비교 >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20억엔 (196억원)	2500만HKD (34억원)	5000만AUD (404억원)	5백만CAD (42억원)	500만 유로 (65억원)	Tier1 6% (OCC 기준)

- 영국·미국 등은 소규모 특화은행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영국) 업무범위가 소매금융으로 제한되는 은행(소위 “challenger bank”)에 대해 자본금요건을 완화*(500만 유로→100만 파운드)
 - * ‘13년~’16.7월까지 총 14개 은행 인가 완료 / 20여개 은행이 인가절차 진행 중
 - (미국) 특수목적국법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제도를 운영하여, 신탁업·대출·지급결제서비스 등에 대해 인가

< 보험업 >

-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우리나라(생명 2개, 손해 11개, 제3보험 3개 등 16개 종목별로 허가)와 유사하게 종목별로 보험업을 인가
 - * ① 미국 : 생·손보 구분없이 32개의 보험종목 열거(뉴욕주 기준)
 - ② 영국 : 생명보험 9개, 손해보험 18개
 - ③ 일본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소규모 특화보험사 출현이 쉬운 환경
 -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종목별로 50억원~200억원, 종합보험사 인가시 300억원 필요)에 비해 자본금 요구 수준이 낮은 편*
 - * ① 미국 : 종목별 자본금 요건이 각각 10만불~200만불(1억원 ~ 21억원)
 - ② 영국 : 종합보험사 자본금 요건 370만유로(48억원)
 - ③ 일본 : 종합보험사 자본금 요건 10억엔(98억원)

- 영국, 일본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

- * ① 영국 : 보험료 수입이 500만 유로(65억)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손보는 35만 유로(5억원), 생보는 70만유로(10억원)
- ② 일본 :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요건이 1천만엔(1억원)

< 증권업 >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61개 인가단위, 5~500억원)에 비해 **진입규제가 단순하고 최저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도 낮은 편**

- **(미국) 등록제** 하에서 **등록단위 구분이 없으나**(브로커-딜러 1개 등록단위) 실제 영위할 **업무범위에 따라 자본금요건 차등화***

- * 영위업무의 종류에 따라 **5천 ~ 150만달러**의 자본금 필요

- **(영국) 인가제** 하에서 **인가단위 구분이 없으나** 실제 영위할 **업무범위에 따라 자본금요건 차등화***

- * 단순 증권중개업만 영위시 50만 파운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모두 영위시 125만 파운드, ATS 업무포함시 730만 파운드

- **(일본) 등록제**로 운영되며, **2개의 등록단위***가 존재하며, 영위 업무할 **업무범위에 따라 5천만~30억엔**의 자본금 필요

- * 일반적인 증권사의 업무는 제1종금융상품거래업, 유동성이 낮은 일부 유가증권 거래업무는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 자산운용·자문·일임 >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산운용, 자문, 일임업 등 인가단위 구분이 없고 단순하고 완화된 진입규제 운용**

- **(미국) 등록제**로 **등록단위가 매우 포괄적**(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구분 없음)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요건도 부재**

- **(영국) 인가제**로 운영되며, **포괄적 인가단위를 운영**(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구분 없음), **자본금요건은 12.5만 유로**

- **(일본) 등록제**로 운영되며, 등록단위는 **운용업**(일임포함, 5천만엔) / **투자자문·대리업**(자본금요건 없음)으로 구분

참고3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관련 국내외 참고 사례

< 해외사례 >

- 금융당국 등에서 금융산업의 경쟁 상황 평가보고서를 발간
 - (영국) PRA·FCA 등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경쟁시장청(CMA) 등에서 금융시장 경쟁도를 분석

< 영국의 경쟁상황 분석 사례 >

기관	보고서명	발간주기
PRA	Annual Competition Report	'16년부터 매년
FCA	Annual Competition Report Credit Card, Investment banking, General Insurance 등	'16년부터 매년 '14~'16년
CMA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16년 발간

- 특히, 영국 경쟁당국의 경쟁보고서는 산업환경, 서비스 및 영업모델 등의 혁신성, 소비자 만족도 등까지 폭넓게 분석
-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에서 시장지표 관련 database 제공

< 국내사례 >

(1)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 (설치배경) 방송법 개정('11.7월)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 (구성) 민간위원 9인(방송 분야 3인, 경제 분야 2인, 법률 분야 1인, 회계 분야 1인, 융합기술 관련 분야 2인)으로 구성
- (운영)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용역을 거쳐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

(2)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 (설치배경)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7.9.22)」의 일환으로, 신규 신평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평가
- (구성)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신용평가 업계·수요자·기업 및 금융당국에서 각 2인을 추천)

참고4

업권별 산업현황 및 변화요약

1 업권별 산업현황

	은행	보험	증권	자문·일임
진입 형태	인가	허가	인가	등록
업체수	19개	56개	55개	179개
총자산	2,739조원	1,110조원 (생보 883조원, 손보 277조원)	390조원	7,245억원
당기 순이익	11.2조원	7.8조원 (생보 3.9조원, 손보 3.9조원)	3.8조원	556억원
ROE	6%	5.71%(생보) 11.39%(손보)	7.7%	12.2%

* '17말 기준 (자문·일임업 당기순이익·ROE '17.1~3분기 기준)

2 진입규제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특화금융회사	기대효과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가격경쟁 촉진 √고용창출에 기여
보험	√소액단기보험회사 √온라인 보험사 √특화보험사	√실생활에 밀접한 소액간단보험 활성화 √가격경쟁 촉진 및 고용창출
증권	√중개전문증권회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
자문일임	√1인 투자자문회사 등	√자영업자의 창업활성화 등 고용창출에 기여

※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

-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
- 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인가 → 등록으로 전환('15년말)하여 '17년말까지 140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약 1,1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참고5

인가요건 정비방안(안)

		문제점	개선방안(案)
금융회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차이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vs 발기인 vs 임원+발기인 ■ 추상적 요건(금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투업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적으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삭제
	물적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요건(은행, 금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설비를 적정하게 추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사업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요건(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위반 사건에 연루되는 등 향후 건전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은행, 금투) - 영업내용 및 방법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부합(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또는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구체화(기존 사례 적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비율 요건이 업권별로 상이(은행.금투 8%, 보험.카드 10%) - NCR비율 요건이 업권별로 상이(은행.금투 100%, 보험 200%, 카드 230%) - 지급여력비율 요건이 업권별로 상이(은행 100%, 보험.카드.금투 150%, - 적용시점(월말 vs 분기말)이 업권별로 상이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이 180%, 200%, 300%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건전성 비율 :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10%, NCR 100%, 지급여력비율 100%) - 적용시점 : 전분기말 - 부채비율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요건(금투 등 일부업권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에 차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통일,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방안의 예시 : 유상증자 등
	사회적 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요건(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정 ■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s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사례 적시 등 ■ 업권별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 有 : 최근 5년간 vs 모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통일 : 모든기간
	채무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 有 : 최근 5년간 vs 모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별로 통일 : 5년